463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 품격있는 문명국가

# AI 시대, 법률서비스 개혁방향은?


**정재욱 변호사**

現 한반도선진화재단 'The 새로운 생각' 위원장

現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 발표자 소개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정재욱 / 한반도선진화재단 'The 새로운 생각' 위원장,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 주요 경력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디지털자산 TF) 위원 (2022 - 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리걸테크대응 특위 위원 (2024 - 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9 - 2021)
-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2019 - 2020)
-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2018 - 현재)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15 - 2018)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23. 8.)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 (2015. 2.)
- **연세대학교** 경영학사 (최우등 졸, 2012.2.)

### 저서

- 「**디지털자산과 규제혁신**」, 박영사, (윤창현, 정재욱 등 공저, 2023)

# 1. 현황

## 법무팀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 법무관리시스템 Law.ai

문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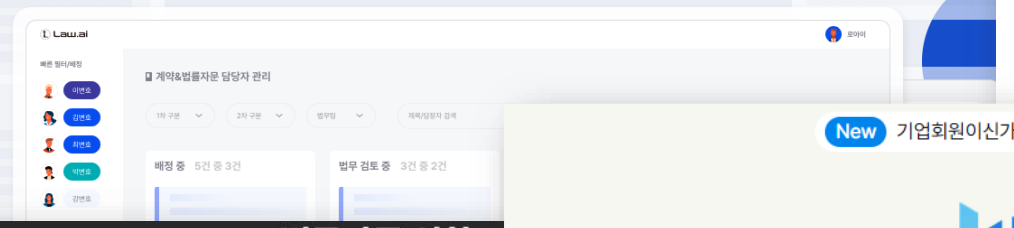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24시간 법률 Q&A 서비스

## 법률고민은 무엇이든, 'AI 대륙아주'에게 물어보세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

**협박**

최근 전애인으로부터 저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협박죄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

**사기**

방금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게 보낸 계좌가 대포 통장이기에 바로 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합니...

## 법률가를 위한 A

## SuperL

슈퍼로이어는 생성형 AI와
법률리서치, 법률서면 초안작성 등 다양한

무료체험

New 기업회원이신가요? 엘박스 AI 프리미엄을 도입해보세요. →

LBOX AI *beta*

## 질문 한 번으로 끝내는 법률 리서치

반복되는 키워드 검색과정 없이 엘박스
원하는 답변을 빠르게 확인해보

무료로 엘박스 AI 시작하기

광고 모델과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광고주가 모델의 사진을 계속 사용한 사례
인정된 판례를 찾아줘.

## 새로운 AI 법률 비서를 만나보세요

법령정보를 대화하듯 질문하면
권위 있는 법률 인용문을 통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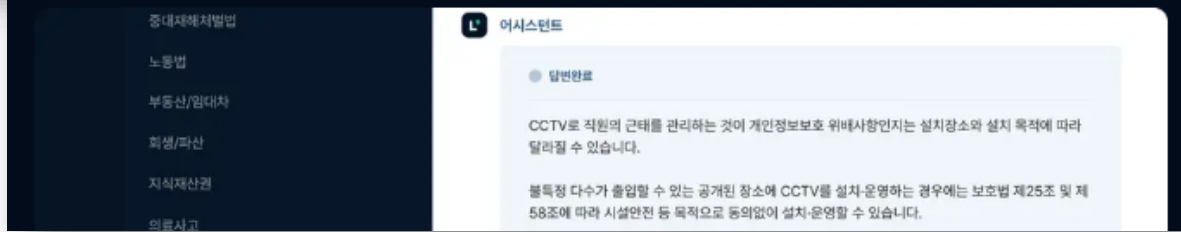

# 2. 기술적 문제 (1): AI Halluciations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AI Halluciations?]**

- Google: AI 할루시네이션은 AI 모델이 생성하는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 이러한 오류는 불충분한 학습 데이터, 모델의 잘못된 가정,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편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AI 할루시네이션은 의료 진단이나 금융 거래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있음.

사회 사회일반

"1분 만에 의견서 초안 완성"...법조계 판 흔드는 '법률 AI'

15곳 넘는 리걸테크 기업서 서비스 운영
일자리 감소·잘못된 판례 '환각' 부작용도

"1000장짜리 판결문, AI가 단숨에 2장 요약"

고은이 기자 ☆

입력 2024.06.26 17:44 수정 2024.06.27 01:58 지면 A12

가가

많이 본 뉴스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3단 논법]**

- 간접추리논법

  -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 소전제: 홍길동은 사람이다.
  - 결론: 따라서 홍길동은 죽는다.

- 3단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 대전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소전제: 홍길동은 운전을 하다 철수를 차로 치여 죽게 했다.
  - 결론: 홍길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홍길동이 차를 몰고 고의로 철수를 죽였다면?
    ② 홍길동이 졸음 운전을 하다 철수를 죽였다면?
    ③ 비오는 깜깜한 밤에 철수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었다면?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IRAC]**

- IRAC? Issue / Rule / Application or Analysis / Conclusion

  - Issue: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이 사건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
  - Rule
    -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판례: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 재물 ' 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 정보 '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
  - Application
    - ✓ 이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나아가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적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 Conclusion: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B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거래소의 계정에 200E을 보유하고 있던 그리스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D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E을 자신의 B 계정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8. 6. 21. 그 중 2E을 15,040,293원의 원화로, 2018. 6. 26. 1E을 6,973,511원의 원화로 환전한 후 그 무렵 자신의 대출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8. 7. 11.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D 법무팀으로부터 위 E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나머지 196.999E(1,423,514,774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45,528,578원 상당의 총 199.999E을 횡령하였다.

**2. 관련법리**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참조).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E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① E을 포함하는 가상화폐는 자연물리계에서 일정한 질량과 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가상화폐를 자연력의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동력'에 포섭하기도 어렵거니와, 여기서의 '관리'는 물리적 관리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디지털 코드로서, 디지털 방식에 의한 전기, 빛 등의 신호를 컴퓨터의 연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를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며, 기억매체에 고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 모든 디지털 코드에 해당하는 성질로서 가상화폐만의 특질이 아니고, E을 위시한 가상화폐는 암호화된 디지털 코드와 소위 '블록체인' 기술, 즉 공개된 공동분산원장 기재방식에 의하여 전체 발행량을 조절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비로소 가상공간에서 통화로서의 기능을 획득하는 것인바, 이러한 가상화폐로서의 특질은 사무적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한편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위 '착오송금' 사례에서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 · 이체된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앞서 든 대법원 2017도17494,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3. 판단**

위 사례에서 계좌명의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인데, 일반적으로 거래계에서 예금을 금원과 사실상 동일시하고 있고, 예금채권의 형태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금전이라는 재물로 인출하기 용이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계좌명의인은 송금된 금원 자체를 예금의 형태로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특정한 시점에서의 거래시세에 따른 화폐 가치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E을 위시한 각종의 가상화폐가 등장하여 사실상 상당한 환금성을 가지고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국가에 의하여 법적으로 통화로서의 강제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정의되지 못한 상태이고, 예금채권은 표시되는 액면에 해당하는 고정적인가치의 법정통화를 표상하여 대응하는 반면, 가상화폐는 그 시세가 수시로 변동될 뿐만 아니라, 거래소에 따라서도 시세를 달리하고, 실물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수요에 따라서는 가치가 '0'원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으므로, 가상통화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여 다른 거래상대방이나 혹은 거래소 등의 업체를 통해 특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것만으로 그 거래시세에 대응하는 특정한 금액의 금원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ChatGPT 자동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B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거래소의 계정에 가상화폐 200E을 보유하고 있던 그리스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D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E을 자신의 B 계정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8. 6. 21. 그 중 2E을 15,040,293원의 원화로, 2018. 6. 26. 1E을 6,973,511원의 원화로 환전한 후 그 무렵 자신의 대출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8. 7. 11.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D 법무팀으로부터 위 E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나머지 196.999E(1,423,514,774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한국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지 살펴봐주시고 그 해답을 알려주세요.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피고인이 한국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이체받아 보관한 행위
2.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가상화폐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한 행위

### 1. 절도죄 또는 횡령죄 가능성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성립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상화폐가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상화폐도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몰래 이체받아 보관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체된 가상화폐가 이미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온 경우, 피고인이 그 가상화폐를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을 위탁받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2. 사기죄 또는 배임죄 가능성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상화폐를 취득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가상화폐를 이체받았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죄 성립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 **배임죄**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배임죄보다는 절도나 횡령죄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 피해자가 받은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절도,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 4. 반환 요구 거부 행위

-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거부한 점은 피고인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범죄 의도를 명확히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결론

피고인은 한국 법령에 따라 **절도죄** 또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가상화폐가 한국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보나요?

가상화폐가 한국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법상 "재물"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유형의 재산을 의미하는데, 가상화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형법상 재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가상화폐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1도4779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상화폐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적 정보에 불과하고, 이를 **형법상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가상화폐는 **재물**이 아니며, 대신 **재산상 이익**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의미

따라서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재물에 대한 절도죄**가 아닌, **재산상 이익에 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나 제355조의 **횡령죄**에서 "재산상 이익"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결론

가상화폐는 한국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도 가상화폐를 재물로 보지 않는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는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되어 다른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 AI Hallucinations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다시 피고인이 형사처벌 될 수 있을지 확인해 주세요

가상화폐가 형법상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처벌 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1. 횡령죄 성립 여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가상화폐는 재물로 보지 않으므로 **횡령죄**에서의 "재물" 요건은 충족되지 않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상 이익**도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무단 이체받아 보관하고, 그 일부를 원화로 환전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상 이익을 불법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는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되므로,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한 행위는 횡령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2. 사기죄 성립 여부 (형법 제347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상화폐를 이체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기망행위를 통해 가상화폐를 이체받았다는 정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3. 재산상 이득에 대한 죄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한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횡령죄** 또는 **부당이득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크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상화폐도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인은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가상화폐가 **재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AI Hallucinations



횡령죄는 재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ChatGPT 신규 버전에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응답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응답을 불러오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응답 1

맞습니다. **횡령죄**는 원칙적으로 **재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물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유형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상화폐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되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횡령죄 적용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한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사기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응답 2

맞습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물"**이라는 용어입니다. 횡령죄는 형법상 **재물**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같은 무형의 재산은 전통적인 의미의 횡령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상화폐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으로,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의 "재물"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AI Hallucinations

응답 1

맞습니다. **횡령죄**는 원칙적으로 **재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물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유형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상화폐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되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횡령죄 적용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한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사기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사기죄의 객체가 됩니다.

### 2.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 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상태에서 이를 배신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화폐와 같은 재산상 이익이 관련된 범죄에서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횡령죄는 **재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나 **배임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피해 금액이 크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이 더 좋아요

응답 2

맞습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물"**이라는 용어입니다. 횡령죄는 형법상 **재물**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같은 무형의 재산은 전통적인 의미의 횡령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상화폐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으로,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의 "재물"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대안: 재산상 이득에 대한 처벌

비록 가상화폐가 재물로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재산상 이득**에 관한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관리하거나 처리할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자산을 부당하게 이체받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론

횡령죄는 **재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가상화폐와 같은 무형의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배임죄** 등 다른 형법 조항을 통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이 더 좋아요

# AI Halluci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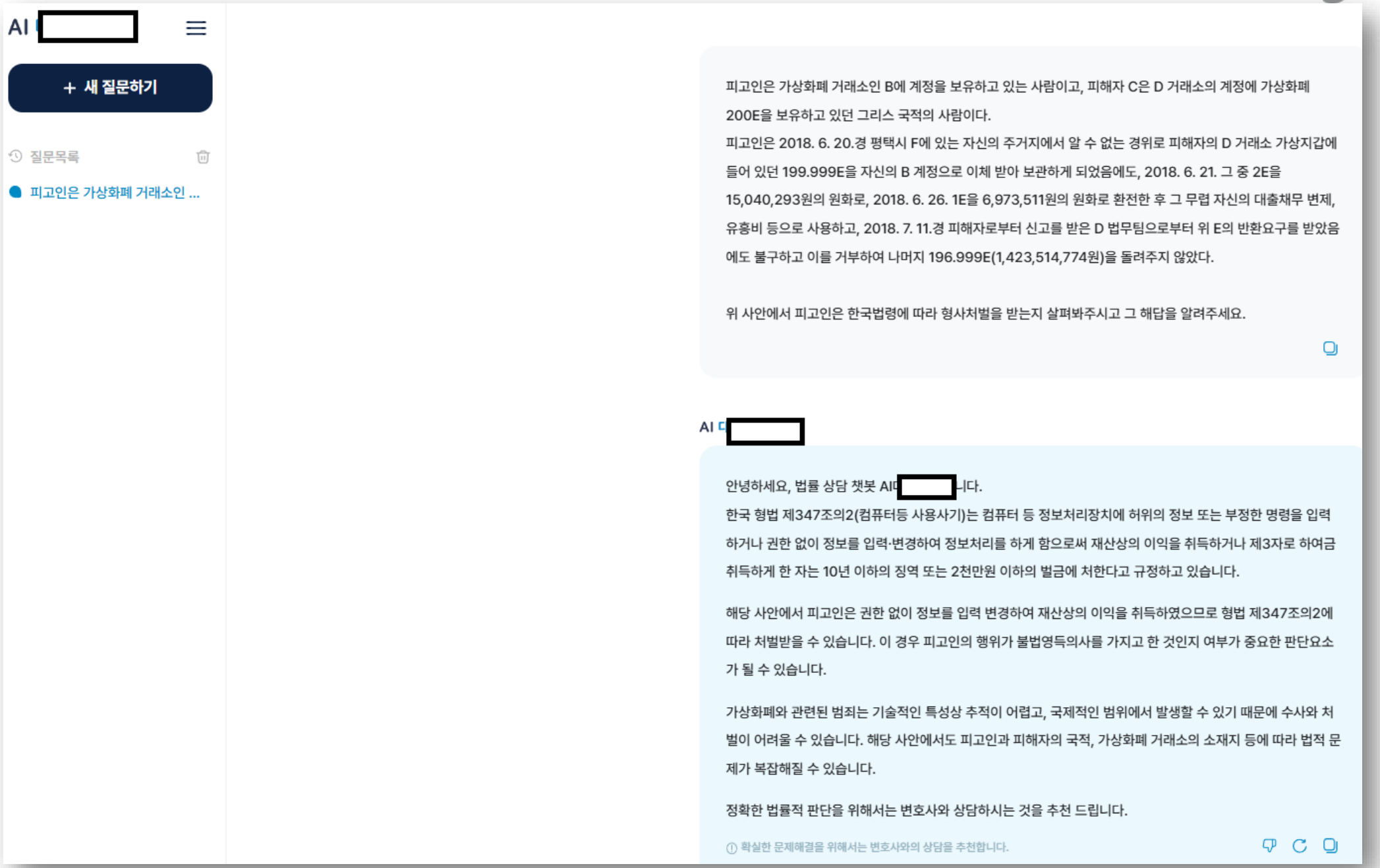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해결방법?]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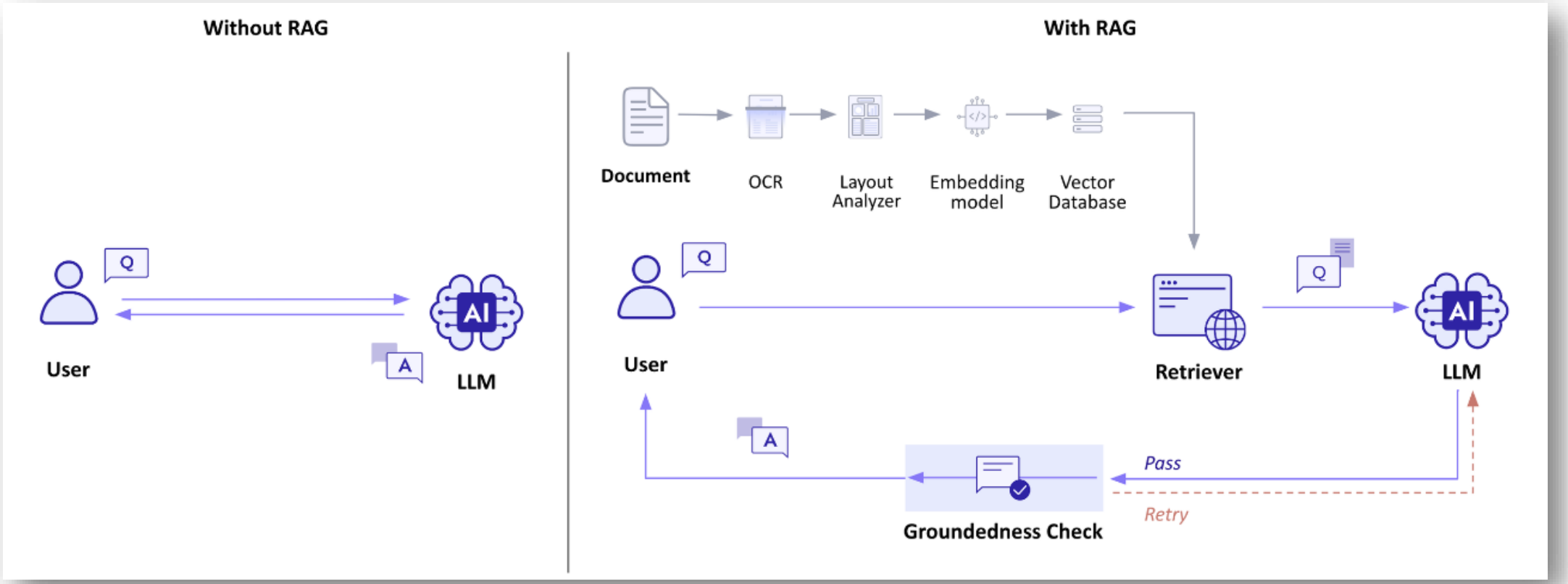


[출처: LLM의 환각 현상을 해결하는 RAG 및 Groundedness Check – Upstage (https://ko.upstage.ai/feed/tech/llm-rag-groundedness-check)]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해결방법?]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 RAG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할루시네이션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AI 모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해결책이 바로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렵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와 사례로 천천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RAG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말 그대로 '검색된 결과로 생성형AI 모델을 보완(증강)하여 답변을 생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AI 모델의 답변이 그럴듯하지만, 신뢰도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언어모델을 비롯한 생성형AI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단순히 답변만을 보아서는 해당 답변이 어떤 데이터에서 온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답변이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먼저 검색을 통해 일차적인 결과를 불러온 뒤 이 결과를 기반으로 LLM이 답변을 생성하게 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죠. 검색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답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또 생성형AI 모델이 가진 창의적인 장점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RAG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RAG 시스템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는 '오픈북 시험(Open Book Exam)'입니다. 대학 시절, 시험 범위가 아주 넓은 과목에서 종종 오픈북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지가 나눠지고 시험이 시작되면 질문의 대상이 되는 원서나 자료를 펼치고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Retrieval, 검색). 단답식 질문인 경우에는 바로 답변을 적겠지만,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여러 내용을 비교해야 하거나 복합적으로 내용을 활용해야 할 때는 필요한 내용들을 답변으로 쓸 수 있게 나름의 논리로 내용을 정리합니다(Augmented, 증강).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지에 답을 씁니다(Generation, 생성). 간단하지요? RAG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오픈북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AI INSIGHT | RAG의 모든 것: 할루시네이션 없는 생성형 AI 모델 활용법 | スキN (sknetworks.co.kr)(https://blog.sknetworks.co.kr/22659)]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해결방법?]

- **RAG**

## 검색-증강 생성이란 무엇인가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출력을 최적화하여 응답을 생성하기 전에 학습 데이터 소스 외부의 신뢰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를 참조하도록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며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언어 번역, 문장 완성과 같은 작업에 대한 독창적인 결과를 생성합니다. RAG는 이미 강력한 LLM의 기능을 특정 도메인이나 조직의 내부 지식 기반으로 확장하므로 모델을 다시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LLM 결과를 개선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관련성, 정확성 및 유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 검색-증강 생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LLM은 지능형 챗봇 및 기타 자연어 처리(NLP)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핵심 인공 지능(AI) 기술입니다.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소스를 상호 참조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자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LLM 기술의 특성상 LLM 응답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LLM 훈련 데이터는 정적이며 보유한 지식에 대한 마감일을 도입합니다.

LLM의 알려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이 없을 때 허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최신의 응답을 기대할 때 오래되었거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 응답을 생성합니다.
- 용어 혼동으로 인해 응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훈련 소스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현재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를 거부하지만 항상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지나치게 열정적인 신입 사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태도는 사용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챗봇이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RAG는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접근 방식입니다. LLM을 리디렉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전 결정된 지식 출처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합니다. 조직은 생성된 텍스트 출력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LLM이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RAG란? - 검색 증강 생성 AI 설명 - AWS (amazon.com) (https://aws.amazon.com/ko/what-is/retrieval-augmented-generation)]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실제 의미 있나? 해외 연구 사례]

- Varun Magesh, Faiz Surani, Matthew Dahl, Mirac Suzgun, Christopher D. Manning, Daniel E. Ho: **Hallucination-Free?**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Leading AI Legal Research Tools.** CoRR abs/2405.20362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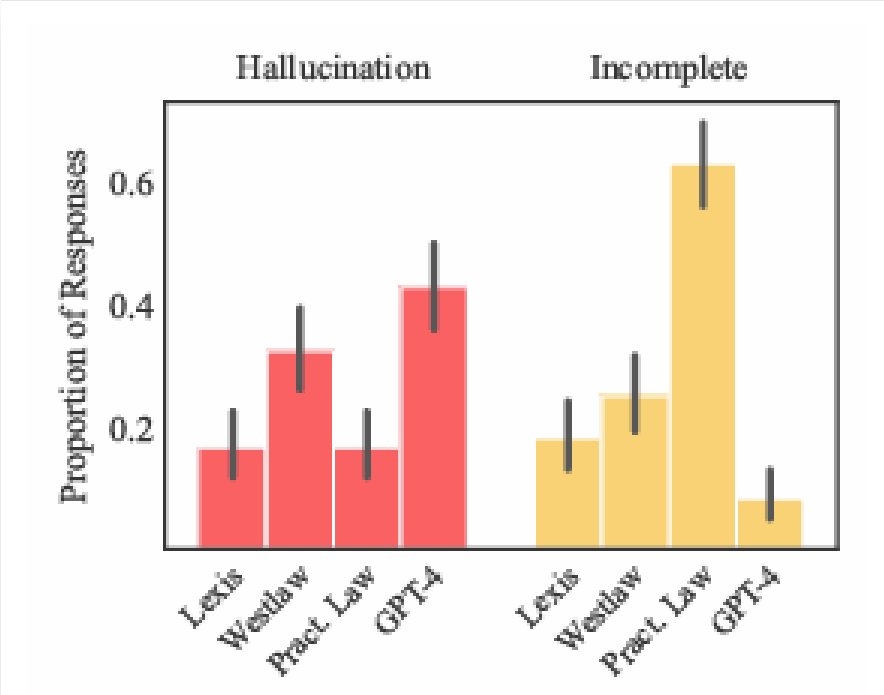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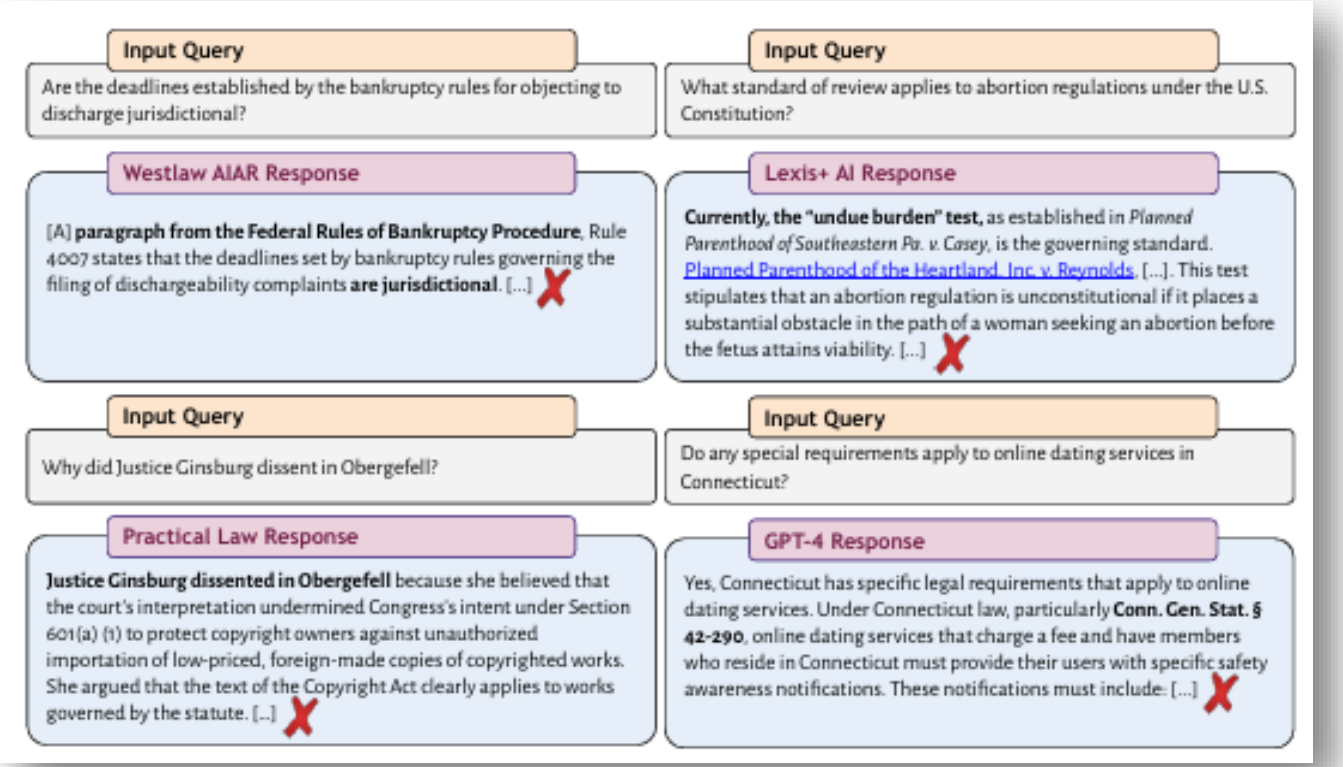

# AI Hallucinations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실제 의미 있나? 해외 연구 사례]

- Varun Magesh, Faiz Surani, Matthew Dahl, Mirac Suzgun, Christopher D. Manning, Daniel E. Ho: **Hallucination-Free?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Leading AI Legal Research Tools.** CoRR abs/2405.20362 (2024)

  - 법률 실무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합한 제품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 이러한 도구들은 판례 검색 및 요약에서부터 문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핵심 법률 업무를 지원하도록 설계 그러나 이러한 도구에 사용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을 일으키기 쉬워, 고위험 분야에서 사용 시 위험**
  - 최근 일부 업체들은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와 같은 방법이 환각을 "제거"하거나(Casetext, 2023), "회피"하며(Thomson Reuters, 2023), "환각 없는" 법적 인용을 보장한다고(LexisNexis, 2023) 주장
  -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
  - 본 논문에서는 AI 기반 법률 연구 도구에 대한 첫 번째 사전 등록된 경험적 평가를 설계하고 보고 위 업체들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입증.
    - ✓ 일반적인 대화형 AI(GPT-4)와 비교했을 때 환각은 줄어들었지만, LexisNexis(Lexis+ AI)와 Thomson Reuters(Westlaw AI-Assisted Research 및 Ask Practical Law AI)가 각각 17%에서 33% 사이의 환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
    - ✓ 시스템 간 응답성과 정확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확인

# 2. 기술적 문제 (2): 데이터 확보 가능성

# 판례 관련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판결문 전면공개 관련]

###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서를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판결서 공개 추진 경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

| 2013.01.01 대법원 | 2014.01.01 형사판결서 증거/기록목록 공개 | 2015.01.01 민사판결서 공개 | 2019.01.01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서비스 오픈 | 2023.01.01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
|---|---|---|---|---|
| ▸ 2013. 1. 1.부터 | ▸ 2014. 1. 1.부터 | ▸ 2015. 1. 1.부터 | ▸ 2019. 1. 1.부터 | ▸ 2023. 1. 1.부터 |
| 형사 사건 확정 판결서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형사 합의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민사 사건 확정 판결서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판결서 인터넷 통합 열람·검색서비스 및 형사판결서에 대하여도 임의어 검색 가능 |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서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 형사 합의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의 비전자적 공개 | 형사 단독사건 및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 | | | |

# 판례 관련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판결문 전면공개 관련]

- 2023년부터 우리 법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지만 여전히 형사 미확정 판결문과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소액사건 판결문,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변론 공개를 금지한 사건, 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결정이 있는 사건의 판결문은 검색·열람 대상에서 빠져있음

- 이전부터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증거목록 등 포함)과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에 대한 검색·열람은 가능해짐. 문제는 대상 자체가 2013년, 2015년 이후 확정 판결이어서 그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은 홈페이지 상에서 열람할 수 없음. 게다가 판결문 1건당 1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해, 사실상 여러 판결문을 찾을 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실정임.

- 법원행정처 통계 자료와 연도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전체 본안 판결 건수(미확정 판결 포함)는 △2019년 93만938건 △2020년 92만5999건 △2021년 89만1361건 △2022년 83만4799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2년까지는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사건 등도 확정 판결만 등록돼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올라간 판결 건수는 △2019년 41만4270건 △2020년 42만5537건 △2021년 41만718건 △2022년 41만8288건으로 해마다 약 45%였음.

* 자세한 내용은 [신년기획][판결문 전면공개를 향하여] ① 국내 판결문, 기본권 침해 우려해 공개 확대 꺼려 (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news/194558) 참조.

# 판례 관련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형사사건 관련]

- 전자소송은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
  - ✓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2011년 5월 민사 전자소송, 2013년 1월 가사·행정 전자소송, 2013년 9월 신청 전자소송, 2014년 4월 회생·파산 전자소송, 2015년 3월 집행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가능.
  - ✓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2010년에 일부 사건에 대한 전자약식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9년부터는 형사기록의 전자사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도까지는 형사사건 분야에서도 전면적인 형사전자소송 서비스 도입을 예정.
- 관련 법령: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0.**] [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제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각각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4. 6. 20. 입법예고**
    - 부칙 제2조 2조(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절차는 2025. 6. 9.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은 제1항에 따른 적용일 이후에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변호사 정보 관련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로마켓 사건:**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공2011하,1997]]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lawmarket.co.kr)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변호사들의 이름, 출생지, 성별, 사법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법원·검찰 근무 경력 등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인맥지수에 반영되는 요소로는 출생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외국 대학교, 사법연수원, 법원·검찰청 근무 경력 등이 있으며, 같은 반영 요소 중에서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동기라 하더라도 1~9기 동기에는 10점, 10~12기 동기에는 7점, 13~27기 동기에는 3점, 28~34기 동기에는 1점을 부여한다), 중복되는 경력 요소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어 반영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는 사실(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동기이자 같은 대학 및 같은 학과 동문일 경우에는 3점이 추가로 가산되고, 고시반이 존재하는 사립대학교 0~7년차 동문의 경우에도 역시 3점이 추가로 가산된다),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인맥지수를 해설하면서, 철저하게 공개되고 검증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특허등록이 되어 있으며 4년여에 걸쳐 200명 이상의 법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부항목에 부여되는 점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게재한 사실, **피고는 인맥지수를 이용하여 '가까운 법조인 찾기', '두 사람의 관계 보기', '징검다리 인물 찾기' 등의 검색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 사실

# 변호사 정보 관련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로마켓 사건:**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공2011하,1997]]

(중략) 위와 같이 산출된 인맥지수는 법조인 간의 친밀도라는 사적이고 인격적인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가치를 갖는 정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맥지수에 의하여 표현되는 법조인 간의 친밀도는 변호사인 원고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평가적 요소와는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서 일반 법률수요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라고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래 사람 간의 친밀도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서 타인이 알 수 없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인맥지수는 피고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임에도 마치 실제 법조인 간의 객관적 친밀도를 표현한 것처럼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인맥지수 서비스는 사회 일각의 사법불신 풍조에 편승하여 법조인 간의 친밀도가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도 주로 그러한 인식하에서 서비스에 접근할 것이므로, 인맥지수 서비스가 통용된다면 위와 같은 일반의 그릇된 인식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인맥지수 서비스 보호를 통하여 정보주체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인맥지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적 가치의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우연히 유리한 인맥지수가 제공된 특정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우월적 지위는 인맥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인맥지수 서비스는 변호사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 변호사 정보 관련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로마켓 사건:**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공2011하,1997]]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30조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비변호사가 변호사의 연고관계 등을 공개하는 데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그 산출과정에서의 왜곡가능성, 그 이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그에 반하여 그 이용으로 인하여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

# 3. 법제도적 문제: 변호사법 위반

# 변호사법 관련규정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법 관련규정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광고]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사례



## 로펌 “24시간 AI 법률상담”... 변협 “변호사법 위반” 논란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3-21 11:29

2 1

**‘대륙아주’ 시연회 열고 서비스 시작**
**“빚 받으려면” 묻자 10초만에 “민사”**
**법조계 일각 “AI 상담은 위법” 주장**
**“무료” 홍보에도 ‘제2 로톡’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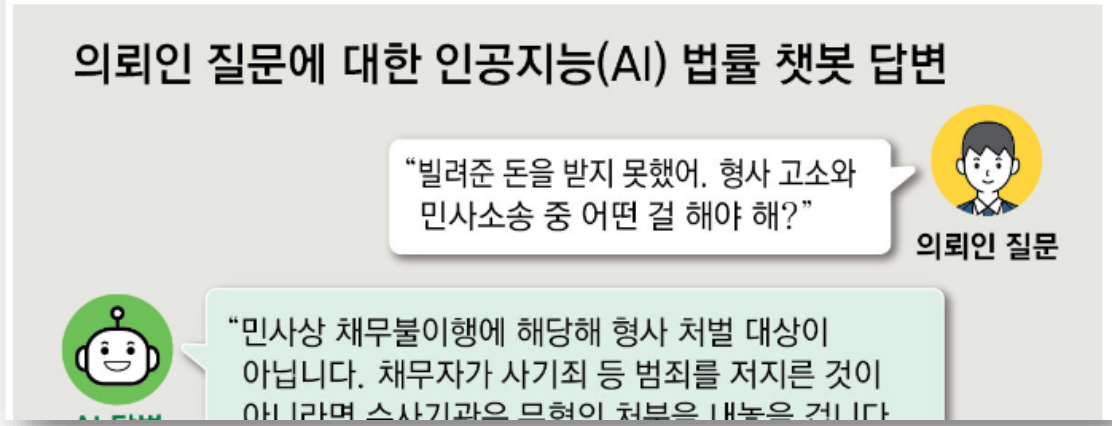

# 사례

[주식회사가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의 요지

가. 특정주식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법률문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1) 변호사법 제109호제1호의 '법률관계문서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제109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정주식회사의 대표자가 변호사인 경우

(1) 위 주식회사의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법률문서 작성서비스의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3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위 주식회사의 서비스이용료가 다른 변호사를 통한 법률문서 작성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명시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례

[주식회사가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가. 결론의 요약

(1) 특정주식회사의 법률문서 자동서비스 제공업무는 '법률관계문서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그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위 주식회사의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의 법률문서 작성 자동서비스의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에 저촉되고, 위 주식회사의 서비스이용료가 다른 변호사를 통한 법률문서 작성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명시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7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4호에 해당합니다.

# 사례

[주식회사가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논거

(1)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법률문서를 4개 카테고리 즉 기업문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합의서로 분류하고 각 문서별로 전문적·실용적인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하여 자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각 단계별로 나누어 이용자가 그 내용을 입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별지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의 카테고리와 그 이용방법 참조)는 변호사의 법률사무의 일종인 법률관계문서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주식회사가 위 법률문서 자동 작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사례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주식회사가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변호사는 애초 대표이사로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내이사로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속회가 A변호사를 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겸직을 허가한 취지는 인공지능(AI)을 활용 등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언에 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나 역할이 다르고 그에 따른 허가기준이 다르므로 소속회는 추후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고,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행하는 겸직허가행위의 법적 성격을 공공조합이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행위는 항고소송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2003. 4. 16. 선고 2002구합 32964판결 참조). 그런데 A변호사가 사내이사의 겸직허가를 이용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위 주식회사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의 법률문서 작성 자동서비스의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3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겸직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위 주식회사로 하여금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의 법률문서 작성 자동서비스의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제5항에 위배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의 서비스이용료가 다른 변호사를 통한 법률문서 작성비용보다 저렴하다고 명시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7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4호에 해당합니다.

# 사례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지급명령 소프트웨어 제작 관련 변호사법 위반 여부]

1. 질의의 요지

甲법무법인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을 홍보 및 수임하기로 함. 이에 따라 'A'라는 법률전문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와 홈페이지 및 솔루션 제작 계약을 체결함(지급명령 솔루션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이 독자적으로 기획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작하고, 이와 동일한 형태의 솔루션은 개발하지 못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함. 법무법인은 A회사에 솔루션 제작비와 함께 매달 운영 유지비, 사용료 등을 지불함).

- 질의 1. 甲법무법인은 위 홈페이지에 업무방식을 소개하면서 그 업무가 'IT'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 'A'라는 솔루션 제작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질의 2. 위 A라는 회사가 A의 홈페이지에 법무솔루션에 관하여 '지급명령솔루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위와 같이 제작한 지급명령 홈페이지 링크를 소개하는 것(지급명령 솔루션은 독점계약에 따라 위 법무법인만 사용이 가능)이 변호사법 위반인지, 광고비를 받고 지급명령 홈페이지 링크를 소개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
- 질의 3. A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호사(법무법인의 지분 과반수 보유)이고 , 甲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경우 A회사가 법무법인 이름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법무관련 솔루션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 예) 법무법인 @@, @@소프트웨어주식회사
- 질의 4. 질의 1, 2항이 동업관계로 오인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A회사는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업체에 불과하고 동업관계가 아님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례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지급명령 소프트웨어 제작 관련 변호사법 위반 여부]

3. 검토의견

가. 결론의 요약

각 질의에 대한 답변은 甲법무법인이 A업체와 동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립니다.

- 질의 1.

법무법인이 홈페이지에서 업무방식을 소개하면서 'A'라는 솔루션 제작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질의 2.

A회사가 홈페이지에 법무솔루션에 관하여 '지급명령솔루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위와 같이 제작한 지급명령 홈페이지 링크를 소개하는 것(지급명령 솔루션은 독점계약에 따라 위 법무법인만 사용이 가능)은 가능합니다.

광고비를 받고 지급명령 홈페이지 링크를 소개하는 것도 동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이 광고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질의 3.

A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호사(법무법인의 지분 과반수 보유)이고, 甲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경우 A회사가 "법무법인 @@, @@소프트웨어주식회사"와 같이 법무법인 명칭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법무관련 솔루션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례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지급명령 소프트웨어 제작 관련 변호사법 위반 여부]

- 질의 4.

질의 1, 2항이 동업관계로 오인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A회사는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업체에 불과하고 동업관계가 아님을 명시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위 명시 여부가 아니라 실질관계에 따라 결정될 일입니다.

나. 논거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는다거나, 변호사가 받는 대가의 일부를 수취하게 된다면 이는 동업 규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률 업무로 인한 대가의 일부를 광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통상의 광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광고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방법인 이상 허용됩니다.

광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 통상의 광고 대가인지 동업에 해당하는 대가 분배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사례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지급명령 소프트웨어 제작 관련 변호사법 위반 여부]

질의 사안에서 법무법인은 A회사에 지급명령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자는 A회사에 솔루션 제작비와 함께 매달 운영 유지비,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돈이 통상적인 사용료나 광고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돈이 법무법인이 받는 수임료의 일정 비율과 같은 방식이거나 통상적인 사용료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동업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또, 지급명령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지급하고 개발 종료 후 매달 추가로 운영 유지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소프트웨어 개발 후에 추가로 운영 유지비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편법적인 동업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질의 1. 부분).

만일, 실제 동업이 아니라면,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위 솔루션 개발사와 업무 제휴를 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A사의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의율하는 바가 아니어서 가능합니다. 다만, A사의 홈페이지에서 甲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연결시키는 대가를 받는 것이 동업 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질의 2. 부분).

# 사례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지급명령 소프트웨어 제작 관련 변호사법 위반 여부]

A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호사(법무법인의 지분 과반수 보유)이고, 甲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경우인 경우에 A회사가 "법무법인 @@, @@소프트웨어주식회사"와 같이 법무법인 명칭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법무관련 솔루션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전적으로 법률사무 처리를 전문적, 조직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겸직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질의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변호사법이 금하고 있는 겸직 내지 동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3. 부분).

또, 질의자는 질의 1, 2항이 동업관계로 오인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A회사는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업체에 불과하고 동업관계가 아님을 명시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甲법무법인이나 A회사가 스스로 주장하는 여부가 아니라 상술한 실질관계에 따라 결정될 일입니다(⇒ 질의 4. 부분).

# 4. 제언

# 감사합니다.

## AI 시대, 법률서비스 개혁방향은?

**정재욱 변호사**

現 한반도선진화재단 'The 새로운 생각' 위원장

現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